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석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67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일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1명)

찬 성 자 : 임만균, 김소양, 박상구, 김재형,  
김제리, 이정인, 권순선, 최웅식,  
이광호, 서윤기, 이세열, 박기재,  
채유미, 이동현, 김태수, 노식래,  
김종무, 김동식, 장인홍, 김기대,  
의원(20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기존상업지역이 포함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상업기능을 발휘하는 상업지역의 면적을 축소시키게 됨.
- 이에 기존 상업지역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신규 및 종상향 제외), 이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해당 조례에 덧붙으로써 자치구의 의사를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내에 기존의 상업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 결정절차 중에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단서내용 추가(안 제9조제3항)

#### 4. 기타사항

가. 관련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협의”를 “협의(다만 종상향 없이 기존상업지역 내에 사업대상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u>협의</u>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 각 호의 축진지구지정 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협의(다만 종상향 없</u> <u>이 기존 상업지역내에 사업대상지</u> <u>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u> <u>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u> 하여야 하며, ----- ----- ----- ----- -----</p> <p>④ (현행과 같음)</p>